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7. 15.

제출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의 적용비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복리·안전·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 조례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중 “15분의 1” 을 “20분의 1” 로 수정함
- 조례 제11조 (서명보정기간)중 “10일 이내” 를 “20일 이내” 로 수정함
- 조례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제2항중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를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로
제3항중 “과반수는” 을 “3분의2이상은” 으로

제4항제1호중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제4항제2호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으로

제10항중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 를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3. 참 고 사 항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2012(2004.03.11)호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 및 운용요령”

○ 행정자치부 발간(2004.04.22)

•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 표준조례안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복리·안전·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안 조례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중 “15분의 1” 을 “20분의 1” 로
수정함

안 조례 제11조 (서명보정기간)중 “10일 이내” 를 “20일 이내” 로
수정함

안 조례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제2항중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를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로

제3항중 “과반수는” 을 “3분의2이상은” 으로

제4항제1호중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제4항제2호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으로

제10항중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 를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수정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u>기타 주민의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u>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u>기타 복리·안전·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u>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 -----<u>15분의 1</u>-----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 -----<u>20분의 1</u>-----

현행	수정안
제11조(서명보정기간) ----- -----10일 이내-----	제11조(서명보정기간) ----- -----20일 이내-----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생략) ② <u>심의회</u> 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생략) ② <u>심의회</u> 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 -----과반수는----- -----	③ ----- -----3분의2이상은----- -----
④ ----- ----- -----	④ ----- ----- -----
1. <u>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u>	1. <u>공무원</u>
2. <u>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	2. <u>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u>
3. (생략)	3. (생략)
4. (생략)	4. (생략)
⑤ (생략)	⑤ (생략)

현행	수정안
⑥(생략) ⑦(생략) ⑧(생략) ⑨(생략)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⑪(생략) ⑫(생략) ⑬(생략) ⑭(생략)	⑥(생략) ⑦(생략) ⑧(생략) ⑨(생략)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홈페이지에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⑪(생략) ⑫(생략) ⑬(생략) ⑭(생략)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공영개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복리·안전·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이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는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⑧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⑨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⑪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⑫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⑬심의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도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 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5호서식 】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 ○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 책중 ○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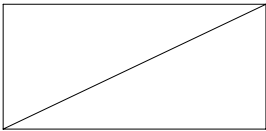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8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의 결 사 항

의안명

제 출 자	구 미 시 장
제출 연 월 일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9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사항	재적위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구미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	의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